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4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1호	50	100
나.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1항	300	500
다.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1항	300	500
라.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2호	50	100
마.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2호	50	100
바.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2호	50	100

사.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2호	50	100
아.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1항	300	500
자.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1항	100	300
차.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제1항	100	300